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0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조경태·서천호·박덕흠

곽규택 • 박성민 • 서일준

성일종 • 박수영 • 조정훈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현재"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정당방위) ① <u>현재</u> 의 부당	제21조(정당방위) ① <u>현재 또는</u>		
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	<u>임박한 미래</u>		
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			
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